제1883호

2022. 9. 22.(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6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2-1618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제2022-1621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제2022-1633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제2022-1635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제2022-1639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고 시

· 제2022-145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 30
· 제2022-146호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37

다음장에 계속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56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82-2022

공 고

· 2022-1620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 38
· 2022-1627호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5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사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 11. 19.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신설(안 제5조~제9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시기 및 계획 포항사항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전화: 2670-3441, FAX: 2670-3628, E-mail: iceyou@ydp.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조례 내용 정비
   나. 자치법규 정비기준 준수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
   나. 자활기금 “법정의무” 사항으로 변경에 따른 존속기한 규정 삭제
   다. 자치법규 명칭, 용어 등 표현 정비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4층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02-2670-3385, 팩스: 02-2670-3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에”를 “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 ----------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6 조 (지 원 대 상) ---------- ---- 구에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3. ---------- 자활사업실시기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조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
   나.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안을 명시하여 사각지대 해소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조례의 주요대상을 1인 가구에서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조정
   다. 제8조(지원사업) 6항, 제9조(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670-3944, 팩스: 02-2670-1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을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 “고독사 위험자” 란”을 “ “고독사위험자” 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로 한다.

제4조 중 “1인 가구”를 “가구(거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추진계획의 수립)”을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계획”을 “예방 및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위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독사”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외·단절된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1인가구 중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사업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3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증진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내 체육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명확화(안 제1조, 2조)
나. 공공체육시설 구민 감면 신설 및 사회적약자 등 감면 확대 (안 제9조, 별표 2,3의 비고)
다.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관련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감면 규정 정비 (안 제5조, 제9조, 별표 2,3의 비고)
라.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9조)
마. 체육시설 신규 확충 및 환경개선에 따른 체육시설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02-2670-3142, 팩스: 02-2670-3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등포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영등포구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영등포구의”를 “구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등포구가”를 “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30% 감면
가.「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제9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④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1의 안양천 체육시설의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23.10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게임장 1면 농 구 장 2면 축 구 장 2면

별표 1의 유수지 체육시설의 신길 유수지의 주요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목적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

별표 2 ○ 개인사용료 비고란 제2호 중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란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사용료 등”을 “수강료 등”으로 한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별표 2 ○ 전용사용료 비고란 제3호 중 “각종행사 개최시”를 “각종 행사 개최 시”로 하고, 같은 란 가목 중 “영등포구”를 “구”로, “구청장기”를 “구청장기(배)”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를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로, “협회별”을 “단체별”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4호 중 “각종행사 개최시”를 “각종 행사 개최 시”로 하며, 같은 란 가목 중 “영등포구”를 “구”로, “구청장기”를 “구청장기(배)”로,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를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로, “협회별”을 “단체별”로 한다.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로 한다.

5.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3.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구 ----------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생 략)	제7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영등포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 구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및 경기	1. ---------- 구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가 별표 3의 대림운동장 축구장,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사용할 때	5. 구가 ----------
6. 영등포구 대표선수가 해당종목의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6. 구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함께 오는 보호자 1명	2. 3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삭 제>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삭 제>
5.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삭 제>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
1. 초등학생 이하 사용료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사용허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1]

안양천 체육 시설	신정교~ 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3면
유수지 체육 시설	신길 유수지	3,679㎡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별표1]

안양천 체육 시설	신정교~ 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문래동)	23,10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풋살장 2면 X-게임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2면
유수지 체육 시설	신길 유수지	3,679㎡	다목적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농구장 2면

[별표2]

○ 개인사용료 비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노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별표2]

○ 개인사용료 비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7.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 비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3]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사용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전용사용료 비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3]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주관 및 구청장기(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 행사 개최 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사용할 때 대림운동장, 안양천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민턴 체육관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사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 심의위원회를 활용·통합 운영함으로써 의견진술 처리 및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추가(안 제1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 추가(안 제2조)
라. 사회복지, 환경 분야 관련 부서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주차문화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문화과(전화:02-2670-3996, 팩스: 02-2670-3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주·정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를 “과태료 부과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을 “의견진술”로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차관리”를 “주차관리, 사회복지, 환경 분야 관련”으로 한다.

1. 감사·교통·주차, 사회복지·환경 분야 관련 부서 공무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3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제4호 관련)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2. 그 밖의 과태료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주차장 보수 및 공사를 위한 경우	주차장 보수 등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 및 충전시설 고장의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정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처분 ---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과태료 부과의 ----------.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신 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 의견진술 ----------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감사·교통·주차 관련부서 공무원	1. 감사·교통·주차, 사회복지·환경 분야 관련부서 공무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별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제2호 관련)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보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④ ---------- ------- 주차관리, 사회복지, 환경 분야 관련 ----------.

[별표]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제4호 관련)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보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2. 그 밖의 과태료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충전방해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주차장 보수 및 공사를 위한 경우	주차장 보수 등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 및 충전시설 고장의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45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7길 17 (당산동1가) 외 50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차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6-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길 17 (당산동1가)	20220922	신규부여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퍼스티어 호스텔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81 (대림동)	20220922	신규부여	20100422	행정구역 명칭 사용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3-18, 63-6, 63-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32 (영등포동7가)	20220922	신규부여	20100422	도로구간 내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지역 특징 인용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로 11 (신길동)	20220922	신규부여	20100422	행정구역 명칭 사용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연번	변경전 주소	변경후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04길 1-10 (신길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24-4 (신길동)	20220922	건물번호 변경	20101125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명명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 번	종전주소	폐지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31-4 (영등포동8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동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우신 자동차 서비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영등포동6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동과 신길동을 지나는 도로	민주당 당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0길 24-3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5-1 (영등포동2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3 (영등포동3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7길 20 (당산동1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1-9 (양평동1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영등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9나길 4-1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여의대방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가길 8 (양평동5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양평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50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신길동 동명칭 인용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8-6 (양평동4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422	옛 선유봉의 이름 사용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30길 3-3 (문래동3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문래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0길 17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길 16 (도림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라길 4-5 (신길동, 화현아트빌)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화현 아트빌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37-2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35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11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1길 34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7길 8 (대림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가길 11-2 (문래동2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46 (도림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1125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명명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1-2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1125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명명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다길 3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나길 5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나길 1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길 7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16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14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락타운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6가길 12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2-6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 명칭 인용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48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 명칭 인용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69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 명칭 인용	신길6동 주민센터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24-6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 명칭 인용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24-13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방천 명칭 인용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4차길 1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4길 34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4길 32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4길 30-1 (신길동, 신길동다세대주택)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길동 다세대 주택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9길 11-1 (당산동4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9길 11 (당산동4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90길 4 (문래동1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경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서울 여인숙
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80길 3-4 (문래동1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경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27-3 (영등포동4가)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090710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90길 4 (신길동)	20220922	건축물대장 말소	20100527	가마산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6길 4 (영등포동7가)	20220922	건축물 없음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46호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 일대
   - 면적 : 3,356.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순상)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40, 2층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11.01.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2.09.16.

6.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m)	층 수	건축물의 주된용도
3,356.2	24,582.9667	57.38	399.40	90.55	지상29층 지하4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7.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 정비사업비 변경 및 현금청산자 무효 판결에 따른 분양자수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정비사업비 감소 및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20호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2017년 6월 30일 입안 제안된 우리 구 관내 여의도동 21-2번지 여의도 공작아파트에 대하여, 2022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8.17.)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1764호(2017.12.21.)로 주민 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9. 23. ~ 2022. 10. 25.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83),
여의도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운영위원회(☏02-785-993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보건소 6층)

라. 공람의견 제출 방법 : 우편제출(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제출(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마. 공람내용 : 공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	증) 16,929	16,929	-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 당초(안) (영등포구 공고 제2017-1764호(2017.12.22.~ 2018.1.20. 공람내용, 이하 동일)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16,929	16,929	100.0	-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소 계	-	증)450	450	2.66	순부담률 : 5.46% (토지 2.66% + 건축물 2.80%) ※건축물 연면적 : 2,530㎡ →토지환산면적 : 474.1㎡(2.80%)
	공공시설	-	증)450	450	2.66	
획 지 (택 지)	소 계	-	증)16,479	16,479	97.34	-
	획 지1	-	증)16,407	16,407	96.91	공동주택용지
	획 지2	-	증)72	72	0.43	대토부지 (가스정압시설)

■ 수정(안) (2022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8.17.) 결과 반영, 이하 동일)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16,929	16,929	100.0	순부담률 : 12.97% (공공주택(장기전세)) ※공공주택 토지지분 : 1,747.29㎡ 공공주택 토지환산 : 448.35㎡
획 지 (택 지)	소 계	-	증)16,929	16,979	100.00	-
	획 지1	-	증)16,857	16,857	99.57	공동주택용지
	획 지2	-	증)72	72	0.43	대토부지 (가스정압시설)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6,929	-	16,929	100.0%	-
일반상업지역	16,929	-	16,929	100.0%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당초(안)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청사	공공·문화· 복지시설	여의도동 21-2번지 일원	-	증)450	450	-	-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①	공공청사	60%이하	400% 이하	7층 이하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450㎡	• 여의대로6길과 여의동로7길의 교차가각부 보행집결점에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2030서울플랜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 금융관련 복지·창업시설(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창업허브, 금융스타트업 기업공간등), 도서관, 아동·청소년·노인복지시설등을 조성

※ 세부용도는 사업시행인가전까지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필요시설로 결정토록 함

■ 수정(안) : 신설계획 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당초(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929	획지1	16,407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4	-	-	4	-	-
			획지2	72							

■ 수정(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6,929	획지1	16,857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4	-	-	4	-	-
			획지2	72							

2) 건축시설계획

■ 당초(안)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
(%)</th><th rowspan="2">최고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정
상한</th></tr>
<tr><td rowspan="2">신설</td><td rowspan="2">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td><td rowspan="2">16,929</td><td>획지1</td><td>16,407</td><td>여의도동
21-2번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td><td>60
이하</td><td>450
이하</td><td>571.4</td><td>50층
이하</td></tr>
<tr><td>획지2</td><td>72</td><td>여의도동
21-2번지</td><td>가스정압시설</td><td colspan="4">관계법규에 의함</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table><tr><th>구 분</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 고(소형임대)</th></tr><tr><td>계</td><td>634</td><td>100.0</td><td>157</td></tr><tr><td>60㎡ 이하</td><td>346</td><td>54.6</td><td>157</td></tr><tr><td>60~85㎡ 이하</td><td>108</td><td>17.0</td><td>-</td></tr><tr><td>85㎡ 초과</td><td>180</td><td>28.4</td><td>-</td></tr></table>·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8">·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이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센티브 적용
- 우수디자인 5%이내,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 7%이내,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8%이내
· 소형주택 건설 완화용적률(12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여의나루로 도로경계로부터 3m
· 여의대로6길, 여의동로7길 도로경계로부터 6m (공동주택부지에 한함)
· 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 의함</td></tr>
<tr><td colspan="2">기타사항에
관한계획</td><td>차량출입
불허구간</td><td colspan="8">· 여의나루로 및 여의대로6길 도로교차부(지침도에 따름)</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 수정(안)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
(%)</th><th rowspan="2">최고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적
상한</th></tr>
<tr><td rowspan="2">신설</td><td rowspan="2">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 rowspan="2">16,929</td><td>획지1</td><td>16,857</td><td>여의도동
21-2번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td><td>60
이하</td><td>490
이하</td><td>-</td><td>200m
(50층이하)</td></tr>
<tr><td>획지2</td><td>72</td><td>여의도동
21-2번지</td><td>가스정압시설</td><td colspan="4">관계법규에 의함</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table><tr><th>구 분</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 고(공공주택)</th></tr><tr><td>계</td><td>582</td><td>100.0</td><td>공공주택 85포함</td></tr><tr><td>60㎡ 이하</td><td>47</td><td>8.08</td><td>공공주택 20포함</td></tr><tr><td>60~85㎡ 이하</td><td>309</td><td>53.09</td><td>공공주택 65포함</td></tr><tr><td>85㎡ 초과</td><td>226</td><td>38.83</td><td>-</td></tr></table>·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8">·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이내)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센티브 적용
- 우수디자인 5%이내<15%까지 가능>,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6%, 지능형 건축물3등급 9%</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여의나루로변 : 3m(고층부(11층이상) 8m)
· 여의대로6길, 여의동로7길변 : 3m
· 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 의함</td></tr>
<tr><td colspan="3">기타사항에
관한계획</td><td colspan="8">· 차량출입 불허구간
- 여의나루로 및 여의대로6길 도로교차부(지침도에 따름)
· 연도형상가배치구간(폭20m), 도심지원기능배치구간(폭30m)
· 공공보행통로 : 폭6m이상(대상지내 3m)
· 공개공지 : 도로교차부 공개공지 위치지정
(여의나루로 가각부는 부지면적의 3%이상)</td></tr>
</table>

3)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당초(안)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
이용
계획</td><td>계</td><td>대지면적</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d>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16,929㎡</td><td>16,479㎡</td><td>450㎡</td><td>-</td><td>-</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td><td colspan="5">·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 450㎡ - 0 - 0 + 474.1㎡(건축물 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 924.1㎡ (※순부담율 : 5.46%)
※ 건축물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 474.1㎡
- 건축물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 부지가액은 평균공시지가의 2배적용
: 6,704,801원/㎡(2017.1) × 2 = 13,409,602원/㎡
- 건축물 기부채납 기준은 사업시행인가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td></tr>
<tr><td>건축물
기 부
채 납
검 토</td><td colspan="5">① 공공청사(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 연면적) : 2,530㎡
▪ 환산부지면적(㎡)(ⓐ+ⓑ) : 474.1㎡ (474.1 + 0)
ⓐ 토지환산면적 : 474.1㎡ / ⓑ 대지지분면적 : - (별도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종합사회복지관) × 연면적 ÷ 부지가액
= 2,513,000원/㎡ × 2,530㎡ ÷ 13,409,602원/㎡ = 474.1㎡
※ 서울시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 종합사회복지관(1000㎡~3000㎡) 2,513,000원</td></tr>
<tr><td>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400% + 20% = 420%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table><tr><td colspan="2">인 센 티 브 항 목</td><td colspan="2">인센티브</td><td rowspan="11">최대
20%
이하</td></tr><tr><td colspan="2">우 수 디 자 인</td><td colspan="2">15%(5%적용)</td></tr><tr><td>장 수 명 주 택</td><td>• 우수등급이상</td><td colspan="2">10%(7%적용)</td></tr><tr><td rowspan="4">녹 색 건 축 물
에너지효율등급</td><td>•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td><td>6~12%</td><td rowspan="4">최대
15%
이하</td></tr><tr><td>•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td><td>4~8%(8%적용)</td></tr><tr><td>•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td><td>4~8%</td></tr><tr><td>•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td><td>2~4%</td></tr><tr><td>제로에너지빌딩</td><td>•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td><td colspan="2">15%이하</td></tr><tr><td rowspan="4">지능형 건축물</td><td>• 1등급</td><td colspan="2">15%</td></tr><tr><td>• 2등급</td><td colspan="2">12%</td></tr><tr><td>• 3등급</td><td colspan="2">9%</td></tr><tr><td>• 4등급</td><td colspan="2">6%</td></tr></table></td></tr>
</table>

	역사문화보전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420% + (400% × 1.3 × 0.05774) = 450.02%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450㎡ + 474.1㎡) / (16,479㎡ - 474.1㎡) = 0.05774

· 정비계획용적률 = 450.0%이하

예정법적 상한 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571.4%이하**

※ 용적률 및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적용

※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인가 시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정(안)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택 지 (공동주택)	신설 공공시설 등 (공공임대(장기전세))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 등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계	토지지분	건축물 (환산부지)		
	16,929㎡	16,857㎡	2,195.64㎡	1,747.29㎡	448.35㎡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195.64㎡ - 0㎡ - 0㎡ = 2,195.64㎡ (12.97%)						
공공주택 토지지분면적	· 1,747.29㎡ - (공공주택 공급연면적 8,561.65㎡/용적률산정 연면적 82,598.44㎡) × 대지면적 16,857㎡						

<table>
<tr><td>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td><td>·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장기전세)) 환산부지 면적 : 448.35㎡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13,713.62㎡ × 971,818.18원 = 13,327,145,255(원)
: ㉯ = 공시지가주2)) × 2
= 14,862,164(원/㎡) × 2 = 29,724,327(원/㎡)
주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주2) 건축허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22.01. 기준, 대상지 내 평균 공시지가)</td></tr>
<tr><td>기준용적률</td><td>· 기준용적률 = 4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400% + 20% = 420%
· 인센티브 = 20% - 우수디자인(5%) + 녹색건축인증 우수,에너지효율 1+등급(6%)
+ 지능형3등급(9%)</td></tr>
<tr><td>상한용적률</td><td>·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가중치×α(토지)+ 0.7×α(건축물))
= 420% + (420% × (1.3 × 1 × 0.115092 + 0.7 × 0.29532) = 491.52%
⇒ 정비계획용적률 = 490% 이하
<table>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747.29㎡/ (16,929㎡-1,747.29㎡) = 0.115092</td></tr>
<tr><td>α(건축물)</td><td>=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48.35㎡/ (16,929㎡-1,747.29㎡) = 0.029532</td></tr>
<tr><td>가중치</td><td>=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800%(일반상업지역) / 800%(일반상업지역) = 1</td></tr>
</table></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td></tr>
</table>

※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인가 시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당초(안)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8">산 정 내 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3">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8">· 121.4%(571.4% - 450%)</td><td>-</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8">· 60.7%(121.4% × 0.5)</td><td>-</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8">· 9,959.04㎡ 이상(16,407㎡ × 60.7%)</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td><td>건립 위치</td><td>부지면적
(㎡)</td><td>동수</td><td colspan="2">세대수</td><td>세대규모
(전용)</td><td>비고
(연면적㎡)</td><td rowspan="2">의무
면적
이상
확보</td></tr>
<tr><td>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원</td><td>16,407</td><td>-</td><td>계</td><td>157</td><td>-</td><td>9,974.21</td></tr>
<tr><td colspan="5"></td><td>45㎡</td><td>157</td><td>63.53㎡
(45.9㎡)</td><td>9,974.21</td></tr>
</table>

※ 연면적 = 대지면적 x 증가용적률 x 0.5 = 16,407㎡ x 121.4% x 0.5 = 9,959.04㎡(계획 9,974.21㎡)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 수정(안) : 해당 없음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 당초(안)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373세대 변경)634세대 증)261세대	-	-

■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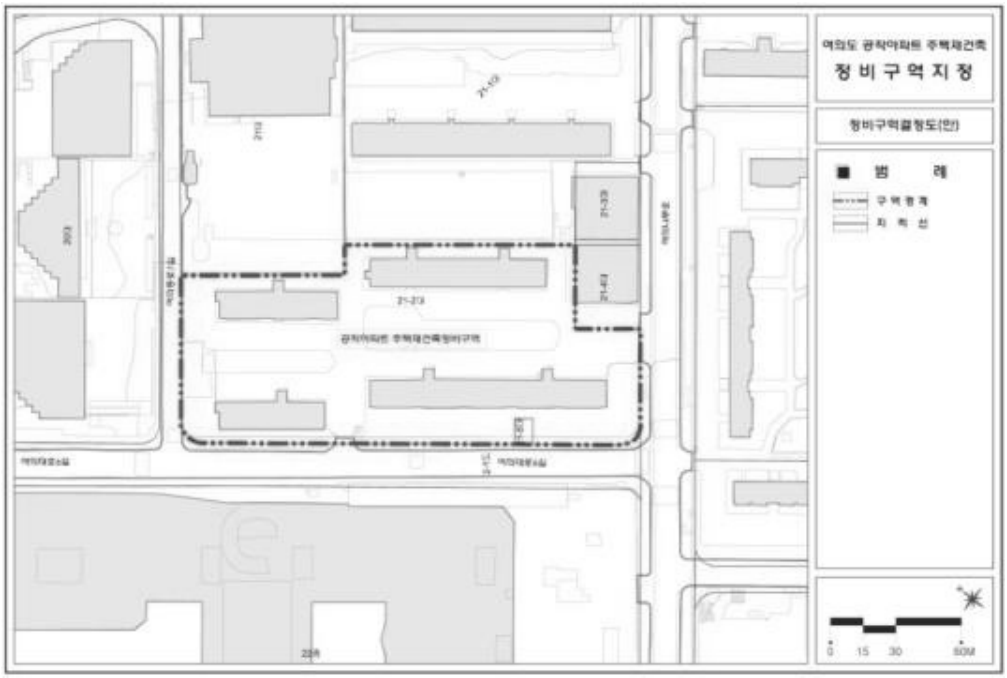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정개발자등	현황)373세대 변경)582세대 증)209세대	-	-

사.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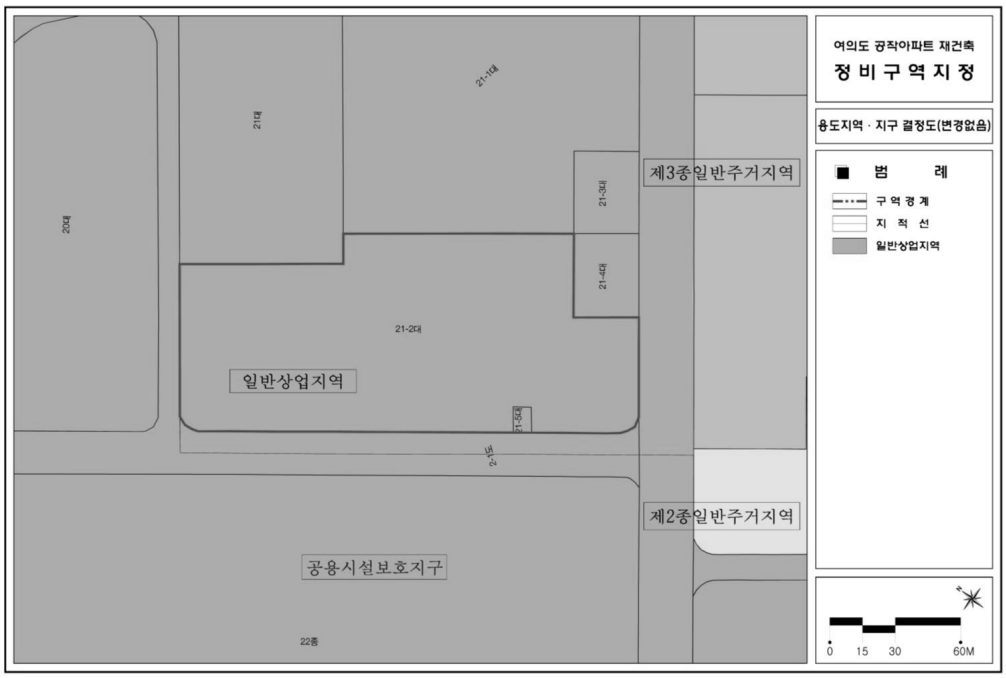
-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공람 장소에 비치된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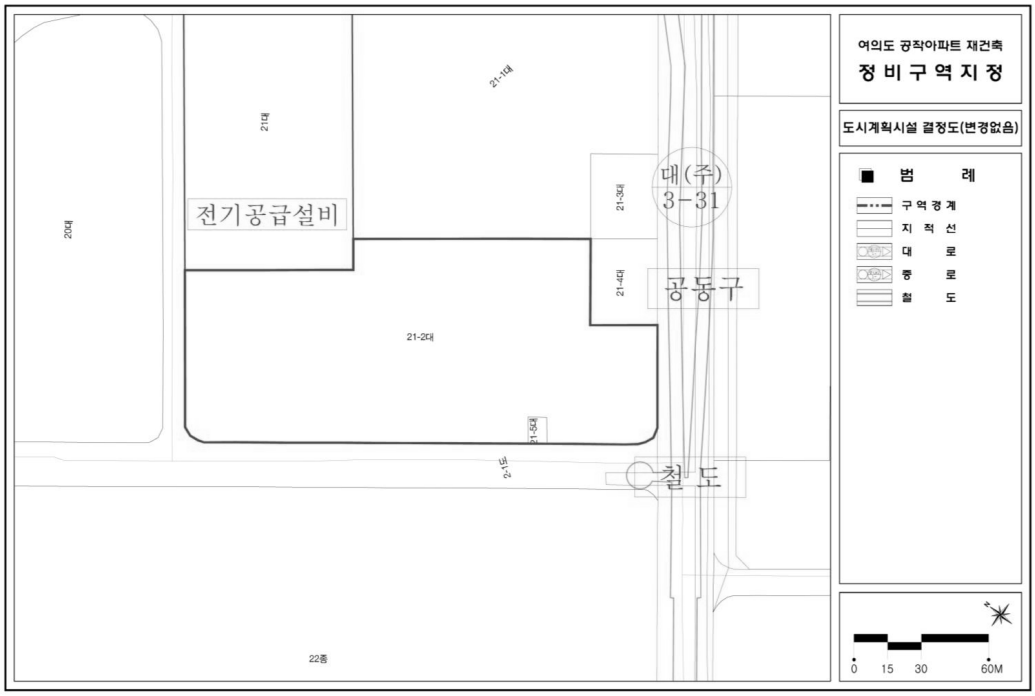
■ 정비구역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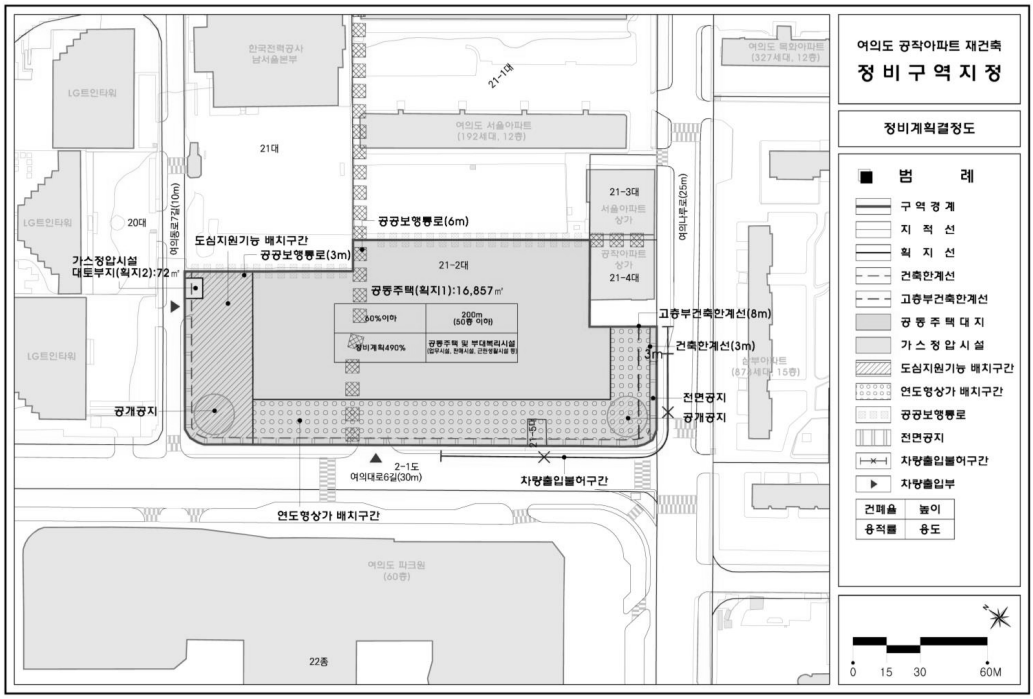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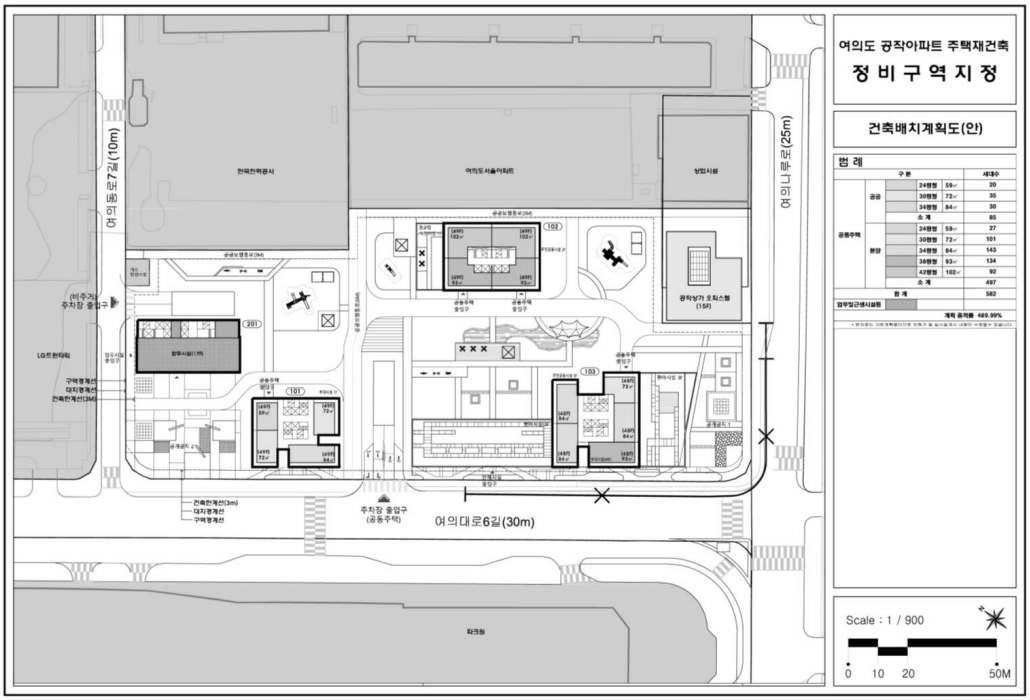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정비계획결정(안)도



■ 건축계획(안)도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 비 구 역 지 정
건축배치계획도(안)
범 례
여의동로 7길(10m)
여의대로(25m)
여의대로6길(30m)
주차장 출입구
(공동주택)
Scale : 1 / 900
0 10 20 50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627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무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무과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4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5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자치행정과
6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과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	부과과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2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과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환경과
15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푸른도시과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영등포시니어클럽」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어르신복지과
17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	기획예산과
18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문화체육과 외 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의거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02,783	1,060,180	861,532	198,648	72,570	12,115	113,963
일 반 회 계	966,260	1,025,081	830,650	194,431	71,623	11,988	110,820
특 별 회 계	36,523	35,099	30,882	4,217	947	127	3,143
의료급여기금	562	673	532	140	-	6	135
주 차 장	34,208	31,841	29,255	2,587	800	70	1,717
건 축 안 전	1,753	2,585	1,095	1,490	147	51	1,291

나. 재무제표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합 계	2,646,684	34,523	2,612,161	864,669	828,398	36,271
일 반 회 계	2,475,305	34,317	2,440,988	844,596	804,931	39,665
특 별 회 계	135,009	206	134,803	16,903	18,977	△2,074
기 금	50,623	0	36,370	7,369	8,689	△1,320
내 부 거 래	△14,253	0	0	△4,199	△4,199	-

다. 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6,424	8,382	24,919	16,537	34,8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14,313	14,313	-	14,313
중소기업육성기금	7,372	△4,431	5,491	9,922	2,942
남북교류협력기금	50	101	101	-	152
자활기금	1,146	35	88	53	1,182
양성평등기금	1,129	8	18	10	1,137
노인복지기금	2,297	△10	29	39	2,287
옥외광고발전기금	812	△65	590	655	74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16	△13	164	177	304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823	22	40	18	846
재난관리기금	5,656	△808	1,455	2,263	4,849
도로굴착복구기금	5,452	△656	2,535	3,192	4,795
체육진흥기금	445	7	7	-	452
식품진흥기금	923	△122	86	208	801

라. 성과보고서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미달성			
합 계	10	57	161	28	124	9	861,532	887,433	△25,901
감사담당관	1	1	5	2	3	0	258	322	△64
기획재정국	1	6	19	4	15	0	41,344	69,123	△27,779
미래비전추진단	1	6	13	1	12	0	40,888	39,690	1,198
복지국	1	8	26	1	22	3	449,249	371,760	77,489
생활환경국	1	6	16	4	11	1	69,022	63,315	5,707
안전교통국	1	6	19	5	12	2	60,990	49,378	11,612
도시국	1	6	21	3	16	2	7,807	5,229	2,578
행정지원국	1	11	25	7	17	1	152,361	253,191	△100,830
보건소	1	6	14	1	13	0	35,698	31,346	4,352
구의회사무국	1	1	3	0	3	0	3,915	4,079	△164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분 / 용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	감	
합 계		1,788,214	175,117	13,158	1,950,173
행정재산	소 계	1,773,173	173,969	10,055	1,937,087
	공 용 재 산	350,218	21,340	-	371,558
	공 공 용 재 산	1,422,955	152,629	10,055	1,565,529
일 반 재 산		15,041	1,147	3,103	13,086

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증(취득)		감(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490	12,923	172	440	43	50	1,619	13,314

사. 채권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9,123	12,924	8,530	23,517
원 금	19,123	12,893	8,499	23,517
이 자	-	31	31	-

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	증가액 ㉱	지출액 ㉲	
합 계	8,944	131	25,122	24,991	9,075
보 증 금	2,492	△391	300	691	2,100
보 관 금	4,779	△263	24,562	24,300	5,041
잡 종 금 등 기 타	1,673	260	260	-	1,93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
합 계	21,458	14,463	11,118	150	3,195
일반회계	21,347	14,463	11,118	150	3,195
특별회계	111	0	0	0	0

나. 사용내역

합 계 (7개부서) 11,268백만원

○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 사업 44,263천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000천원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일자리경제과) 510,308천원

○ 사회적경제과: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사회적경제과) 1,011,590천원

○ 복지정책과: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10,220천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8,173,592천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이월) 76,647천원

○ 사회복지과: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9,540천원

○ 교통행정과: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교통행정과) 80,000천원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월) 73,400천원

○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반환금 367,41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487천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사유

○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의 구비 분담금, 법정 필수경비 및 필수 추진 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 편성을 위한 예산조치가 필요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2.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964,992,163**	**876,183,282**	**88,808,881**	**10.1%**	
일반회계	928,450,831	842,036,221	86,414,610	10.3%	
특별회계	36,541,332	34,147,061	2,394,271	7.0%	
의료급여	680,864	519,570	161,294	31.0%	
주 차 장	32,922,629	31,183,155	1,739,474	5.6%	
건축안전	2,937,839	2,444,336	493,503	20.2%	

3. 주요 재원

○ **일반회계** ····· 86,414,610천원
- 세외수입 ····· △1,216,510천원
- 보조금 ····· 6,514,978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81,116,142천원

○ **특별회계** ····· 2,394,271천원
- 의료급여기금 ····· 161,294천원
- 주 차 장 ····· 1,739,474천원
- 건축안전 ····· 493,503천원

첨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피해 및 원자재값 상승,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자금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결 요청함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변경: 2,543,413천원
- 융자지원 규모 확대: 1,000,000천원
- 융자 시기 조정(12→9월)을 위한 재원 확보: 1,000,000천원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 등 반영: 543,413천원

첨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나. 대 상: 공원 18개소 및 교차로 2개소 명칭 제정·변경

제안부서	제정(변경)안	기존명칭	위 치	비고
푸른도시과	어울숲	신길9구역	신길동 243-58	
	도토리	대림3주택	대림동 1127-6	
	늘품	신길5구역	신길동 4960	
	당찬	상아현대	당산동5가 43-2	
	조롱박	대림	대림동 869-2	변경
	영신	당산4구역	당산동4가 99-1	
	꿈모아	모아미래도	문래동5가 10-3 외 4	
	해무리	신안인스빌1	문래동4가 67-1	
	달무리	신안인스빌2	문래동4가 68-1	
	아기자기	신길11구역	신길동 4945-1	
	옹기종기	신길14구역	신길동 4955-3	
	오순도순	신길12구역	신길동 336-317 일대	
	소예	신길8구역	신길동 3126 일대	
	라온	신길9구역	신길동 3403 일대	
	정담	신길5구역	신길동 4962-1, 2	
	화담	신길7구역	신길동 4950-1	
	원두막	파밀리에	대림동 1124-3	
	상산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205-1	

제안부서	제정(변경)안	기존명칭	위 치	비고
교통행정과	서울해군호텔앞	해군회관앞	신길동 4880	변경
	서울해군호텔앞 교차로	해군회관앞 교차로	신길동 4934-11	변경

다. 개 요

- 제정(변경) 사유
  · 푸른도시과: 신규 조성되어 가칭으로 불리는 공원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제정 및 변경하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교통행정과: 기존 교차로 명칭의 시설물 공식명칭 변경, 주민 혼란 예방 및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제정(변경) 방법: 지역사정에 밝고 주 이용자가 되는 공원 및 교차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명칭 제정·변경

3.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가. 개 요

- 일 시: 2022. 8. 26.(금) 16:30
- 장 소: 영등포구청 본관 3층 소통방
- 참석위원: 총 6명
  · 행정지원국장(부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 최봉희 위원(구의원), 안민성 위원, 최성호 위원
- 심의결과: 2건 가결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의 2(승인)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2022.01.26.)」에 따라 주거비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03. 11. 08 : 영등포 뉴타운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
○ 2004. 12. 30 : 영등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430호)
○ 2005. 12. 22 :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
○ 2010. 01. 21 :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
○ 2012. 11. 0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6. 01 .04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
○ 2020. 11. 26 : 조합설립인가
○ 2021. 09. 10 : 제7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시구합동회의
○ 2022. 02. 21 : 영등포1-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회의
○ 2022. 08. 04 ~ 08. 19: 주민공람(14일간)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개요 - 붙임1 참조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 구역면적 : 144,609.5㎡ (1-11구역 17,391.8㎡)
○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영등포1-11구역의 주거 비율을 완화하여 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적용

4. 주민 의견 청취
○ 공람공고
- 공 고 일: 2022. 8. 4.
- 공고기간: 2022. 8. 4. ~ 8. 19.
- 의견접수 및 조치계획: 붙임2 참조
○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추후 제출

5. 검토의견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2022.01.26.)」에 따라 주거비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주택을 확보함에 따라 주거 비율 90% 이하 적용하고자 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2.8.8.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영등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 재산세 〔주택·건축물〕
- 시세 제외(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율
- 반파·전파(유실)된 주택이나 건축물 : 재산세 감면(100%)
-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 : 재산세 감면(75%이하)
- 감면상한액 : 150만원
○ 감면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고급주택 건축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2022.6.2. 이후 2022.8.17.까지 소유권변동분에 대해서는 2023년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붙 임]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부서 담당 업무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 도시재생과 → 주거사업과
나. 부서간 사무분장 정비
1) 주택과: 주택사업 ,시장재건축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 (관리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정 및 결정
3) 도시재생과: 재개발 ·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 재개발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 ·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 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재건축”을 “주택사업, 시장재건축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관리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주거환경개선 (관리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및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10조(도시국) ① ---------- ------- 주거사업과---------- ----------.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공동주택관리, 주택개량, 도시재개발·재건축, 무허가건축,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1. ---------- 주택사업, 시장재건축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관리형), ---------- ----------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주거환경개선 (관리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 ----------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및 결정 ---------- ----------
3.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전문 비서 요원 채용을 통한 비서실 정책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별표2]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개정전	비 율	25%이내	37.5%이내	25%이내	12.5%이상	
개정후	비 율	23%이내	33.5%이내	33.5%이내	10%이상	

나. 직급별 정원표[별표3]

직급별 \ 기관별		개정전					개정후				
		총 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총 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총 계		1,489	1,489				1,489	1,489			
정무직		1	1				1	1			
일반직 계		1,484	1,484				1,483	1,483			
일반직	3급	1	1	-	-	-	1	1	-	-	-
	4급	9	7	1	1	-	9	7	1	1	-
	5급	66	33	2	13	18	66	33	2	13	18
	6급 이하	1,406	1,406				1,405	1,405			
	전문경력관	2	2				2	2			
별정직 계		4	4				5	5			
6급 상당 이하		4	4				5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 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의견의 제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방법 규정(안 제23조~제24조)
나. 의견제출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문서로 통보(안 제25조)
다.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 제정, 개정·폐지 추진 (안 제26조)
라. 의견제출인에 대한 권리 보호(안 제27조~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2. 6. 30. ~ 7. 20.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구민의 권리·의무”를 “주민의 권리·의무”로, “구민의 일상생활”을 “주민의 일상생활”로, “구민에게”를 “주민에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민과”를 “주민과”로, “구민·법인·관련단체”를 “주민·법인·관련단체”로, “구민의”를 “주민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구민에게 과도한”을 “주민에게 과도한”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민에게 불편”으로 한다.

제7장(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제22조(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6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주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 주민의 권리·의무 --------- 주민의 일상생활---------- ---------- ---------- 주민에게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주민과 -------- ----- 주민·법인·관련단체 - ---------- ---------- 주민의 ------ ---------- ---------- ---.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생 략)	제6조(예고문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주민----------.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② (생 략)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생 략)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 주민에게 불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신 설>	제22조(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

	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

	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신 설>	제26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신 설>	제2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이하 생략)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현행화

1) 총 조례 5개/조문 8건(기획예산과 등 5개 부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7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기준) ①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 ---------- ---------- ----------.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 ---------- ---------- --.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었거나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 일괄 폐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 성비율 초과 금지(안 제4조)
다. 명확한 임기 규정(안 제5조)
라. 해촉 범위 확대(안 제7조)
마. 재정지원 조문 신설 및 수당 등 조문 내용 개정(안 제13,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22. 8. 11. ~ 8.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자문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심의·자문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실천활동
6. 에너지위원회 등 환경 관련 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심의·자문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발굴
10.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생활환경국장
   나. 환경과장
   다. 치수과장
   라. 청소과장
   마. 푸른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환경 관련 기관 및 환경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직무태만”을 “장기불참, 직무태만”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를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은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자문
1.「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심의·자문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실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위원회 등 환경 관련 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심의·자문
6. 에너지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발굴
9.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련	10.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4조(구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환경국장, 환경과장, 치수과장, 청소과장, 푸른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생활환경국장 나. 환경과장 다. 치수과장 라. 청소과장 마. 푸른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환경 관련 기관 및 환경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 ---------- ----------.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장기불참, 직무태만-------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제14조·제15조 (생 략)	제15조·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2년 1월 6일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안 제4~5조)
다. 학교(어린이집)·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안 제6~8조)
라.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마. 환경교육과 관련한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22. 8. 11. ~ 8. 31./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지원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2. 제안이유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함.

3. 개정일 : 2022. 3. 24. (제정 2021. 8. 31.)

4. 주요 개정 내용 *신구문대조표 별첨
○ 행정협의회 임원 구성 변경에 대한 사항(제4조)
○ 행정협의회 기능 중 수질 향상에 대한 내용 추가(제9조)
○ 행정협의회 회의 운영에 대한 회의개최 시기 및 간사, 비용에 대한 내용(제11조, 제14조, 제17조)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제정 2021.8.31.
일부개정 2022.3.24.

제1조(목적)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안양천 유역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안양천 서울권역인 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양천구청장·금천구청장과 안양천 경기권역인 광명시장·안양시장·군포시장·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울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경기권역 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하고, 경기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서울권역 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선출된 임원은 임기까지만 직분을 수행하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중에서 정기회의 시 다시 선출한다.

제6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7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위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양천 수질 향상 및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한 하천 준설 추진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8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소속 국·소·원장 이상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 협의회 회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 · 구의 업무 담당 과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 통지한다.

제17조(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8개 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영등포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영등포시니어클럽 운영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지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지관 위탁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위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위탁사무 내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위탁시설 개요 (개관일 2017. 9. 1.)
- 시설구분: 노인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19, 리마크빌 109호
- 규 모: 166.82㎡
- 시 설: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 위탁기간: 2022. 7. 28 ~ 2027. 7. 27.(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공개모집) 수립: 2022.3월
- 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2022. 3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022. 3. 29. ~ 2022. 4. 22.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2022. 6. 15.

○ 소요예산: 2,481,775천원

(단위: 천원)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481,775	383,178	394,833	406,872	419,309	432,156	445,427

나.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 기본현황

- 최초위탁: 2017. 7. 28. ~2022. 7. 27.[(사) 일과삶, 대표 이수홍]
- 운영인력: 6명(관장1, 실장1, 직원4)
- 시설규모: 166.82㎡

○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2017년	202,000	202,000	인건비 및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비 별도)
2018년	316,700	316,700	
2019년	403,117	388,843	
2020년	378,072	378,072	
2021년	372,072	372,072	

○ 위탁 조건의 이행수준: 양호 (연 2회 지도점검)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구 분	지적건수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8년	6건	법인 자부담 계획 미이행, 재물조사 미실시, 예산 집행 시 회계서류 미비 등	자부담이행계획 수립 및 자료 보완
2019년	9건	법인 자부담 계획 미이행,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절, 직원채용 시 결격사유 미확인 등	법인전입금 이행완료 및 자료 보완
2020년	3건	예산 집행 시 회계서류 미비 등	자료 보완
2021년	3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미준수	환수 및 상계처리

○ 사건·사고현황: 해당사항 없음

○ 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84점

3.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가. 심사개요

○ 안 건: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 일 시: 2022. 6. 15.(수) 15:00

○ 장 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실

○ 심사위원: 위원장 포함 7명
○ 심사대상: 2개 법인
○ 심사항목: 법인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 심사방법: 평가지표의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 중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수탁자로 선정

나. 심사결과

기관명	심의점수	심사결과	비고
계영복지재단	81.8	적합	

4. 위·수탁 협약 체결
가. 위탁업체: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나. 체결일자: 2022. 7. 28.
다. 위탁기간: 2022. 7. 28. ~ 2027. 7. 27.(5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영등포문화재단의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나. 평가내용

1) 개 요

○ 명 칭:「2022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 평가기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계약금액: 금14,632,000원

○ 평가주기: 매년 실시

○ 평가기간: 2022. 2. 7. ~ 2022. 6. 16.

○ 평가대상: 2021년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평가

○ 평가등급: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등급 부여기준 >

구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평 점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5점미만

2) 경영평가 결과

가) 총 평

○ 2022년(2021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전년 대비 4.13점 상승하여 93.3점(가점 1.8점 포함)으로 '가등급' 을 달성함. 영등포문화재단 사업 운영은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며 대내·외적으로 세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질적 성장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 지속가능경영 영역은 대내·외 환경요인을 종합하여 비전 및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이를 전담할 문화도시 정책팀을 신설하여 법정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였음.
문화재단 조직이 커짐에 따라 재정다각화 및 재정자립도를 위한 후원금 및 정책사업 유치 등을 통한 외부자금 유치 확대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 사회적가치 영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2.1.27.)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 전략체계 확립 및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지역상생발전 분야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지역 상생 전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영성과 영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부분이 큰 과제 였으나, 축제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또한 서울시 25개구 중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유 정체성 사업의 영역과 문화도시를 통한 새로운 사업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93.3점

○ 영역별 평가 결과

등 급	총 점	지속가능경영(25점)	사회적가치(25점)	경영성과(50점)	가감점
가	93.3	22.5	22.1	46.9	1.8

☞ 전년도 대비 성과【 ’ 21년 89.17점(나등급) → ’ 22년 93.3점 (4.13점 상승)】

○ 세부 평가 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득점
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2점)	경영층의 리더십	6	5.0
		전략 경영	6	5.4
	경영시시스템 (13점)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6	5.3
		채용비리방지	-1.5	0.0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1	0.0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6	5.8
		인건비 인상률 준수	1	1.0
지속가능경영(소계)			25	22.5
사회적가치 (25점)	일자리 확대 (5점)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5	4.8
	사회적 책임 (20점)	소통 및 참여	5	4.0
		윤리 경영	3	2.7
		인권 경영	2	2.0
		재난 및 안전관리	4	4.0
		안전사고 건수	1	1.0
		지역상생발전	5	3.6

사회적가치(소계)			25	22.1
경영 성과 (50점)	사업관리 (20점)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5	5.0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및 타당성	5	4.7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8.6
	사업운영실적 (15점)	공연용 공간 가동 실적	5	4.7
		문화도시 조성 운영 적절성	5	5.0
		도서관 운영 활성화 노력	5	4.8
	독서 및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 (15점)	독서 및 문화예술 향유	3	3.0
		문화예술 지원	3	2.3
		문화복지	3	3.0
		독서·문화예술 교육	3	3.0
		홍보활동 실적	3	2.8
경영 성과(소계)			50	46.9
가감점	가점	코로나19 노력	2	1.8
가감점(소계)			-	1.8
총 계			100	93.3

다)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결과: 91.8점

○ 영역별 평가 결과

등 급	총 점	기반과제(50점)	성과과제(50점)	가감점
가	91.8	45	45.8	1

☞ 전년도 대비 성과【 ’21년 86.8점(나등급) → ’22년 91.8점 (5점 상승)】

○ 세부 평가 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득점
기반과제 (50점)	리더십·전략 (25점)	리더십	25	21.7
		전략		
	경영시스템 (25점)	인사·조직	25	23.3
		재무·예산		
기반과제(소계)			50	45
성과과제 (50점)	경영성과 (30점)	사업관리	30	28.1
		사업운영 실적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복지		
	사회적가치 (20점)	일자리 확대	20	17.7
		사회적책임		
성과과제(소계)			50	45.8
가감점	가점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인증·표창 수상(기관)	+1(건당)	1
	가점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인증·표창 수상(개인)	+0.5(건당)	-
	감점	사회적 물의 보도	-1(건당)	-
가감점(소계)			-	1
총 계			100	91.8

3. 평가결과 활용

○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 결과 보고: 10월

○ 평가결과의 환류과정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경영 실적 향상 도모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3년만의 봄꽃길 개방 운영에 따른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 거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나.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1) 추진기간: 2022. 4. 8.(금) ~ 4. 14.(목)
2) 추진장소: 여의서로 봄꽃길 및 여의도 전역
3) 추진내용
○ 봄꽃길 보행로 개방 운영(교통 전면 통제)
○ 봄꽃길 구간 중앙펜스 설치, 일방향 통행 운영, 질서유지 요원 등 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여의도 전역 집중 질서유지
4) 예산액: 393,454천원(구 325,954천원, 재단 67,500천원)
5) 추진실적

구 분	2022년	비 고
현장상황실	7개 상황실 운영	종합상황실, 안전점검, 가로, 청소, 자원봉사, 도로조명 등
기능부서	11개 부서	순찰, 가로경관, 자원봉사, 청소, 주차 등
봄꽃길 개방	329,100명 입장	봄꽃길 입장인원 (추산)
근무인원	총 3,252명	공무원, 자원봉사, 경찰, 외부 운영인력 등
질서유지 관리	총 1,366건 단속 및 정비	가로정비(338건), 불법 주·정차(1,028건) 등

다. 예비비 사용 이유

1) 문화행사 미 운영으로 서울시 축제 보조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 봄꽃길 개방에 따른 행정 지원(질서유지, 안전관리) 예산 부족
2) 벚꽃 개화 지연으로 인한 봄꽃길 개방일정 변경에 따라, 주말 근무일수 증가(2일→4일)로 근무자 증원 및 추가 운송, 제작비용등의 발생으로 행사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7,000천원 예비비로 편성, 19,660천원 집행

3. 추진경과

가.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 완료 및 신청 ’ 22. 4. 6.

나. 봄꽃길 교통통제 실시 및 현장상황실 설치 ’ 22. 4. 8.

다. 예비비 배정 완료 ’ 22. 4. 9.

라. 봄꽃길 개방실시 및 여의도 일대 질서 유지 ’ 22. 4. 9. ~ 4. 1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관련 운영비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1) 채용기간: 2022. 3. 23. ~ 6. 22.(3개월)
2) 운영인원: 28명(구청 및 동주민센터)
3) 근로형태: 기간제근로자
4) 근무내용: 생활지원비 상담 및 접수 등
5) 예 산 액: 214,239천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214,239		
참여자 인건비	209,751	월 2,497,034원X28명X3개월	22년 생활임금 및 보험료
운영비	4,488	노트북 월 88,000X17대X3개월	렌탈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지연 및 동 현장의 과부하를 해소하고자 채용한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214,23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 213,385천원 집행

3. 추진경과

○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비비 사용계획: 2022. 4. 6.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2022. 4. 11.
○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2022. 4. 13.

코로나19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화물(용달·개별)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같은 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결정)

3)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69차 정기회의 결과안내(’22. 4. 1.)

나. 예비비 사용 이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수입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

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코로나19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2) 사업기간: 2022. 4. ~ 2022. 5.

3) 교부금액: 금 355,600 천원

4) 예비비(구비) 편성액: 금 450,000천원

5) 사업내용: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5톤 이하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1인당 400천원 지급

구분	지급 인원	지급액	소계	합계
용달	678	400천원	271,200천원	355,600천원
개별	211	400천원	84,400천원	

3. 추진경과

가.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2022. 4. 21.

나.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예비비 배정(2022. 4. 26.): 금 450,000 천원 배정

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 1차 지급: 353,600천원(2022. 5. 18.)

○ 2차 지급: 2,000천원(2022. 5. 26.)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도로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계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지역주민, 보행약자 등)의 이동동선 단축을 위한 설계로 공사비 증가

2. 주요내용
□ 필요성
○ 해당 공사는 영등포동과 여의동을 잇는 기존 계단을 철거 후 지역주민과 보행약자 등의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예비비 확보 후 원활한 공사추진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버드나루로12길 8 앞 계단
○ 규모: 기존계단 철거 및 신설, 경사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2022. 2. ~ 10.
○ 총사업비: 310,000(천원)(※ 예비비 60,000천원 포함)
- 2022. 4. 실시설계용역비 16,800천원 집행완료

3. 추진경과
□ 추진실적
○ 2022. 2. 14.: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3. 28.: 계단 및 경사로 형식결정 및 보고
○ 2022. 4. 22.: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 2022. 4. 21.: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2. 7.: 공사 계약 및 착수
○ 2022.10.: 공사 준공(예정)

손해배상(산)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산) 소송에 대하여 우리 구가 일부패소하여 소송 종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2)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확보 및 판결금 지급 계획〔청소과-14300(2022.06.13.)호〕

나. 개요

1) 사 건 명: 2020가단210253 손해배상(산)

2) 원 고: 노민우(환경공무관)

3)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653,492원 및 지연이자 지급

5) 사건내용

- 2018. 9. 3.경 우리구 소속 환경공무관인 피고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의 낙상사고로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부상을 입음에 따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노동능력 상실률: 30.8%(법원의 감정 결과)
·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의 무지 중수수근관절의 인대파열
· 우측 난청 및 표재성 측두골 동맥의 동맥류 통증 후유증 영구

6) 판결내용: 원고 일부 승소(2022. 5. 25.)

○ 피고는 원고에게 230,525,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9.3.부터 2022.5.25.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지출내역

1) 예비비 확보액: 금276,200,662원

2) 지출금액: 금275,625,927원

3) 산출내역 (단위: 원)

원 금	판결금의 이자 5%	판결금의 이자 12%	합 계
230,525,111	42,978,722 (2018.09.03.~2022.05.25.)	2,122,094 (2022.05.26.~2022.06.22.)	275,625,927

라. 예비비 사용 이유

2020가단210253 손해배상 일부패소 판결(2022.5.25.)을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산금액[예산과목: 총무과, 변화를 선도하는 법무행정, 행정기반 조성, 신뢰받는 법무행정, 소송사무처리, 배상금 등(305), 배상금 등(01)]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함

3. 추진경과

○ 2022. 6. 13.: 예비비 확보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청소과)

○ 2022. 6. 16.: 예비비 배정 통보(기획예산과장→청소과)

○ 2022. 6. 17.: 배상금 지급처리(청소과→총무과(예산편성부서)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유치원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나. 사업개요

1) 지원대상: 39개 유치원(공립 12개, 사립 27개)
2) 지원내용: 유치원당 방역지원금 1,000천원 지급
3) 지원방법: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4) 소요예산: 39,000천원(구비)

다. 예비비 사용 이유

1)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시설방역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치원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액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2) 예산 집행(6.30.기준): 37,000천원(2분기 2,000천원 집행)
   ○ 교육경비보조금:
   - 보조금 신청 유치원 35개원 35,000천원 3.7.(월) 1분기 지급완료
   - 신설유치원 2개원(선유초병설유치원, 대길초병설유치원) 2,000천원 6.16.(목) 2분기 지급완료
   - 미신청 유치원 2개원(도신초병설유치원, 대방초병설유치원) 미지급

3. 추진경과

○ 민선7기 4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 의결: 2022. 1. 21.
○ 유치원 방역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2022. 2. 15.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2022. 2. 15.
○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2022. 2. 17.
○ 유치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2. 2. 17. ~ 현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구의 책무)

나.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만19~34세 영등포구 거주자 중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청년
○ 제외: 대학 재학·휴학생,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현 군복무자,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
2) 접수기간: 2022. 3. 28. ~ 5. 27.
3)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모바일상품권 지급(상품권명: 영등포청년취업장려금)
4) 예 산 액: 860,610천원(구비)
○ 상품권구입(855,000천원)+홍보비 등(5,610천원)

다. 예비비 사용 이유

1)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실직 또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필요액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2) 예산 집행(6.30. 기준): 608,372천원
○ 홍보비: 4,872천원 (현수막, 배너, SNS, 마을버스 홍보 등 진행)
○ 상품권구입: 603,500천원 (500천원 × 1,207명)
※ 1,446명에게 총 723,000천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완료(8.31.기준)

3. 추진경과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생대책 공동추진 재난지원금 실무TF회의: 2022. 1. 25.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2022. 3. 8.
○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2022. 3. 8.
○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2022. 3. 16.
○ 취업장려금 접수: 2022. 3. 28. ~ 5. 27.
○ 취업장려금 지급: 2022. 4. 20. ~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결정)

나.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2. 4. 23. ~ 2022. 6. 24.
2) 지원대상: 관내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3) 지원내용: 업소당 방역물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4) 사 업 비: 총 139,000천원(구비)
5) 집 행 액: 12,000천원
- 1개소당 500천원 × 24개소 =12,000천원

3. 추진경과

가.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계획 수립: ’ 22. 2. 18.
나.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 22. 3. 11.
다. 예비비 배정(기획예산과): ’ 22. 3. 16.
라. 사업실시: ’ 22. 4. 23. ~ 6. 24.
마. 사업결과: 24개소 총 12,000천원 지급 완료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상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예비비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나. 사업 개요

1) 사 업 기 간: 2022. 3. 28. ~ 8. 31.
2) 지 원 대 상: 폐업 소상공인 사업체(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3) 지 원 내 용: 폐업점포별 500천원
4) 집 행 액: 279,000천원

다. 사업 추진 결과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의 여파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난 지원 사업이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치구 공동추진사업으로 결정함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 279,000천원을 집행

3. 추진경과

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 의결: 2022. 1.
나.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2022. 3.
다. 사업 실시: 2022. 3. 28. ~ 8. 31.
라. 사업 결과: 대상자 558건, 총 279,000천원 지급 완료